

1.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 내용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1 편 역사와 교리 제 1 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 <p>【2】 1. 복음 수용과 선교사 내한 1870~1880년대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갈망하던 한국인들은 ……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스크랜턴이 5월 3일에 내한하였다.</p>	제 1 편 역사와 교리 제 1 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 <p>【2】 1. 복음 수용과 선교사 내한 1870~1880년대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갈망하던 한국인들은 ……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u>4월 2일 부산을 거쳐</u> 4월 5일 부활주일에 <u>제물포로</u>, 스크랜턴이 5월 3일에 내한하였다. <개정></p>
<p>【9】 8. 일제 말기 교회 수난 일제 말기 교회는 ‘신사참배’를 비롯한 일본의 국가 종교의식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일제의 회유와 위협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점차 강력해지는 일제의 억압하에 한국 감리교회는 1943년 ‘일본기독교조선 감리교단’이 되었다가 1945년 7월 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흡수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앙 양심과 민족의식에 투철한 신앙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투쟁하였다. 예산제일교회 청년·학생들이 ‘학생속회’를 통해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다가 발각되어 투옥되었고, 모곡교회의 민족운동가 남궁억 전도사에게 영향을 받은 홍천과 춘천 지방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십자가당’을 만들어 항일투쟁을 벌이다가 투옥되었다. 그리고 동부연회의 철원읍교회 강종근 목사, 회양읍교회 권원호 전도사, 천곡교회 최인규 권사 등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쟁하다가 옥중 순교하였다.</p>	<p>【9】 8. 일제 말기 교회 수난 일제 말기 교회는 ‘신사참배’를 비롯한 일본의 국가 종교의식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일제의 회유와 위협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점차 강력해지는 일제의 억압하에 한국 감리교회는 1943년 ‘일본기독교조선 감리교단’이 되었다가 1945년 7월 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흡수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앙 양심과 민족의식에 투철한 신앙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투쟁하였다. 예산제일교회 청년·학생들이 ‘학생속회’를 통해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다가 발각되어 투옥되었고, 모곡교회의 민족운동가 남궁억 전도사에게 영향을 받은 홍천과 춘천 지방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십자가당’을 만들어 항일투쟁을 벌이다가 투옥되었다. 그리고 동부연회의 철원읍교회 강종근 목사, 회양읍교회 권원호 전도사, 천곡교회 최인규 권사 등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쟁하다가 옥중 순교하였다. <u>시베리아 선교사로 파송된 김영학 목사는 소련 공산당의 배교 강요를 거부하고 마가단 노동수용소에서 순교하였다.</u> <개정></p>

2. 역사와 교리 개정 절차 문구 조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2 편 헌법 제 10 장 보 칙 <p>【137】 제37조(역사와 교리의 제정과 개정) 제1편 역사와 교리의 개정은 <u>감독회장이 3개 신학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역사신학자 3명과</u> 총회 역사보존 위원회와 협의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다.</p>	제 2 편 헌법 제 10 장 보 칙 <p>【137】 제37조(역사와 교리의 제정과 개정) 제1편 역사와 교리의 개정은 총회 역사보존위원회가 <u>개정안을 제출하고</u>,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다. <개정></p>

3. 교인의 권리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2 장 교 회 <p>【212】 제12조(교인의 권리) 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p> <p>① <u>세례 받은</u>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p>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2 장 교 회 <p>【212】 제12조(교인의 권리) 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p> <p>①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개정></p>

4. 장로의 직무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225】 제25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p>【225】 제25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⑧ <u>총회가 정하는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연수 과정은 별도로 정한다.</u> <신설></p>

5. 교역자 공통자격(최저연령 삭제)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243】 제43조(감리회 교역자의 공통자격 및 제한) 감리회 교역자로 파송 받기 위한 공통자격 및 제한사항은 각 항과 같다.</p> <p>① 감리교회 입교인이 된 후 3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p> <p>② <생략></p>	<p>【243】 제43조(교역자의 공통자격 및 제한) 감리회 교역자로 파송 받기 위한 공통자격 및 제한사항은 각 항과 같다.</p> <p>① 감리교회 입교인이 된 후 3년 이상 경과되고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 <개정></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동></p>

6. 협동회원의 자격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3 장 교역자 <p>【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p> <p>② <생략></p> <p>1. <생략></p> <p>2. 교회개척 후 입교인이 30명 이상 되었다는</p>	제 3 장 교역자 <p>【283】 제83조(협동회원의 자격)</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교회개척 후 입교인이 30명 이상 되었다는</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객관적 증거가 입증되었을 때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교회 모든 재산을 편입한 경우 협동회원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의 재단편입이 불가 시에는 <u>전세계약서</u> 를 제출할 경우 협동회원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수 있다.	객관적 증거가 입증되었을 때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교회 모든 재산을 편입한 경우 협동회원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의 재단편입이 불가 시에는 <u>전·월세계약서</u> 를 제출할 경우 협동회원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7. 출산 또는 육아 교역자의 인사처리 신설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000】 제00조 (출산 또는 육아 교역자의 인사처리) 출산 또는 육아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과 같다.</p> <p><신설></p> <p>① 출산 또는 육아 교역자 중 연회 감독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이는 출산 또는 육아휴직 처리한다.</p> <p>② 출산 또는 육아휴직 중인 교역자는 매년 1월에 소속연회 감독에게 『교리와 장정』 표준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출산 또는 육아 교역자는 만 8세 이하 자녀 1인당 2년 이내, 최대 6년 이내의 출산 또는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출산 또는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미파 처리된다.</p> <p>④ 출산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급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8. 호남특별연회 별도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3 편 조직과 행정법</p> <p>제 6 장 호남특별연회</p> <p>【324】 제124조(호남특별연회 조직과 목적) 호남특별연회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호남특별연회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교증진과 복음전도의 확장을 목적으로 호남 지역의 각 지방회와 교회들로 조직하며 호남특별연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3 편 조직과 행정법</p> <p><삭제></p>
<p>【325】 제125조(호남특별연회 본부의 설치) 호남특별연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호남특별연회 본부를 둔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① 호남특별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 본부'로 한다.</p> <p>② 호남특별연회 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165 2 층에 둔다.</p> <p>③ 이하 조직은 제5장 감독과 연회 본부와 같다.</p>	
<p>제 4 편 의회법</p> <p>제 5 장 호남특별연회</p> <p>【581】 제81조(호남특별연회의 조직) 호남특별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연회차원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감독의 자격과 선출방법은 감독·감독 회장 선거법에 따른다. 감독의 임기와 직무는 조직과 행정법의 법 규정과 같다.</p> <p>① 감독 1명 ② 총무 1명(유급) ③ 선교부 협동 총무 ④ 교육부 협동 총무 ⑤ 사회평신도부 협동 총무</p>	<p>제 4 편 의회법</p> <p><삭제></p>
<p>【582】 제82조(호남특별연회의 직무) 호남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의 직무와 같다.</p>	<p><삭제></p>

9. 선교연회 관련 내용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3 편 조직과 행정법</p> <p>제 7 장 국내외 선교연회</p> <p>【330】 제130조(선교연회의 관리자) <생략></p> <p>【326】 제126조(준용규칙) 국내외 선교연회의 조직,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조직과 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준용하고자 하는 조직과 직무 등의 내용은 입법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p>	<p>제 3 편 조직과 행정법</p> <p>제 7 장 관리자와 선교연회 본부</p> <p>【330】 제130조(선교연회의 관리자) <생략></p> <p>【326】 제126조(준용규칙) 선교연회본부의 조직,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조직과 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준용하고자 하는 조직과 직무 등의 내용은 입법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개정></p>
	<p>제 4 편 의회법</p> <p>제 6 장 선교연회</p> <p>【000】 제000조(선교연회 조직의 준칙) 선교연회는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되어 선교구역이 실제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상으로</p>
<p>【327】 제127조(국내외 선교연회 조직의 준칙) 국내외 선교연회는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구역이 실제하지 아니하는</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회는 조직할 수 없다. 다만,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선교연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하는 연회는 조직할 수 없다. 다만,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선교연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동>

10.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폐기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8 장 미주자치연회 【333】 제133조(미주자치연회 조직의 목적)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8 장 미주자치연회 <삭제> 【333】 제133조(미주자치연회 조직의 목적) <삭제>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삭제>
	제 0 장 미주특별연회 본부 <신설> 【000】 제000조(감독과 미주특별연회 본부) 미주특별연회 본부는 연회가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 행정상 편리한 곳에 두고 해당 연회 감독이 관장한다. <신설>
	【000】 제000조(미주특별연회 총무) 미주특별연회 본부에 감독의 명을 받아 연회 행정사무를 담당할 총무 1명을 두고, 교회를 담임 할 수 있다. <신설>
	【000】 제000조(준용규칙) 미주특별연회 본부의 조직,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조직과 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 4 편 의회법 제 7 장 미주자치연회 【585】 제85조(미주자치연회 의회조직) 미주자치연회의 의회조직과 직무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의한다.	제 4 편 의회법 제 7 장 미주특별연회 【585】 제85조(미주자치연회 의회조직) <삭제>
	【000】 제00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목적) 미주특별연회는 미주 지역 내에 소재한 한국 감리교회들로 구성되며, 교회 재산의 관리 및 종교법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미주 현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미주특별연회를 조직한다. <신설>
	【000】 제00조(미주특별연회의 특별법 발의권) 미주특별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고려하여 대한민국 실정과 명백히 상이한 경우 「교리와 장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법안을 발의하고, 발의된 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고, 입법의회의 결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586】 제86조(미주자치연회 직무) 미주자치연회의 직무는 <u>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준하되</u>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p> <p>① 미주자치연회에 소속한 연회 회원도 국내 은급 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2009년 1월부터 2017년까지 탈퇴기간은 제외하되 2009년 이전 은급 수혜자는 종전의 법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다.</p> <p>② 미주자치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은급재단 이사 이외의 총회 및 본부의 이사나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p>	<p>【586】 제86조(미주특별연회 직무) 미주특별연회의 직무는 <u>연회의 직무에 준하고</u>,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개정></p> <p>① 미주특별연회에 소속한 연회 회원도 국내 은급 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2009년 1월부터 2017년까지 탈퇴기간은 제외하되 2009년 이전 은급 수혜자는 종전의 법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다. <개정></p> <p>② 미주특별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은급재단 이사 이외의 총회 및 본부의 이사나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 <개정></p>
<p>【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⑩ 미주자치연회의 직무는 <u>연회의 직무에 준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은급재단 이사 외에 본부에 파송하는 각종 위원과 이사를 파송할 수 없다.</u></p>	<p>【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⑩ <삭제></p>

11. 미주특별연회 개의 정족수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4 편 의회법</p> <p>부 록 : 의사진행 규칙</p> <p>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p> <p>【670】 제1조(개의)</p> <p>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p> <p>2. 당회와 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p>	<p>제 4 편 의회법</p> <p>부 록 : 의사진행 규칙</p> <p>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p> <p>【670】 제1조(개의)</p> <p>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p> <p>2. 당회와 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는 재적회원(회원권자) 과반수의 등록으로 개의한다. <개정></p>

12. 선교국 관련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3 편 조직과 행정법</p> <p>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p> <p>【345】 제145조(선교국의 조직)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선교국을 조직하고 총무 1명, 부총무 1명(<u>해외</u>선교 담당)과 직원을 둔다.</p>	<p>제 3 편 조직과 행정법</p> <p>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p> <p>【345】 제145조(선교국의 조직)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선교국을 조직하고 총무 1명, 부총무 1명(<u>세계</u>선교 담당)과 직원을 둔다.</p>
<p>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p> <p>3. 세계선교사 관리규정</p> <p>제 6 장 선교 관리</p> <p>【2054】 제14조(<u>선교사</u> 재산 관리) ① ~ ④ <생략></p>	<p>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p> <p>3. 세계선교사 관리규정</p> <p>제 6 장 선교 관리</p> <p>【2054】 제14조(<u>선교지</u>의 재산 관리) ① ~ ④ <생략></p>

13. 선교국 산하 법인 설립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3 편 조직과 행정법</p> <p>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p> <p>【345】 제145조(선교국의 조직)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선교국을 조직하고 총무 1명, 부총무 1명(<u>해외</u>선교 담당)과 직원을 둔다.</p>	<p>제 3 편 조직과 행정법</p> <p>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p> <p>【345】 제145조(선교국의 조직)</p> <p>①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선교국을 조직하고 총무 1명, 부총무 1명(<u>세계</u>선교 담당)과 직원을 둔다.</p> <p>② 감리회 본부 선교국은 그 산하에 법인을 둘 수 있으며,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신설></p>

14. 도서출판kmc 관련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p> <p>【344】 제144조(도서출판kmc) ① 감리회는 <u>본부조직과 별도로</u> 독립하여 도서출판kmc를 <u>설립하고</u> 감리회 본부와 독립채산으로</p>	<p>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p> <p>【344】 제144조(도서출판kmc) ① 감리회의 <u>출판업무와 문서선교사업을 위해</u> 감리회 <u>산하에</u> 도서출판kmc를 둔다. 감리회 본부와</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운영하되 본부는 사무실 제공 외에 일체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p> <p>② 도서출판kmc의 <u>설립</u>, 운영, 이사회 설치, 사장 선임 및 직원 임명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독립채산으로 운영하되 본부는 사무실 제공 외에 일체의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u><개정></u></p> <p>② 도서출판kmc의 <u>조직과 직무</u>, 운영, 이사회 설치, 사장 선임 및 직원 임명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u><개정></u></p>
<p>【359】 제159조(본부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본부 각 국에 위원회와 각 재단에 이사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한다.</p> <p>① 선교국위원회 ② 교육국위원회 ③ 사회평신도국위원회 ④ ~ ⑫ <생략></p>	<p>【359】 제159조(본부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본부 각 국에 위원회와 각 재단에 이사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한다.</p> <p>① 선교국위원회 ② 교육국위원회 ③ 사회평신도국위원회 ④ ~ ⑫ <현행과 같음> ⑯ 도서출판kmc이사회 <신설></p>
<p>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p> <p>2. 도서출판kmc 정관</p> <p>제 1 장 총 칙</p> <p>【2012】 제2조(소속)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속하며 본부 산하 기구로 존재한다.</p>	<p>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p> <p>2. 도서출판kmc 정관</p> <p>제 1 장 총 칙</p> <p>【2012】 제2조(소속)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속하며 본부 산하 <u>기관으로</u> 존재한다. <u><개정></u></p>
<p>【2015】 제5조(사업) 본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p> <p>⑨ 기타 도서출판 및 자료보급</p>	<p>【2015】 제5조(사업) 본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p> <p>⑨ 기타 도서출판 및 자료보급 ⑩ 집필자 발굴 및 양성에 관한 업무 <신설></p>
<p>제 2 장 조 직</p> <p>【2017】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③ 사장(대표이사)</p> <p>2.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u>다만</u>, <u>2022년 선출된 사장의 임기는 2024년 총회 이후 시행하는 본부 구조개편에 따라 2년으로 하고</u> 취임 시 취임계약을 맺고 공증한 후 취임한다!</p>	<p>제 2 장 조 직</p> <p>【2017】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③ 사장(대표이사)</p> <p>2.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u>있으며</u>, 취임 시 취임계약을 맺고 공증한 후 취임한다. <u><개정></u></p>

15.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10 장 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p>	<p>제 10 장 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1 절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p> <p>【380】 제180조(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역사적으로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선교한 연합감리교회에 대하여 본 감리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주 안에서 형제 교회로서 서로 간에 대표를 파송하여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선교에 이바지한다.</p>	<p>제 1 절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p> <p>【380】 제180조(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역사적으로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선교한 연합감리교회(<u>UMC</u>)에 대하여 본 감리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주 안에서 형제 교회로서 서로 간에 대표를 파송하여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선교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u>미국 글로벌감리교회(GMC)</u>도 <u>연합감리교회(UMC)</u>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개정></p>

16. 연회 재편 시행일 연기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4 편 의회법</p> <p>제 8 장 연 회</p> <p>제 1 절 연 회</p> <p>【587】 제87조(연회)</p> <p>①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호남특별연회, 미주자치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p> <p>② 제1항에 규정된 연회를 5~6개 연회로 재편한다. 다만, 연회 명칭,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u>2025년</u>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u>2026년</u> 총회부터 시행한다.</p>	<p>제 4 편 의회법</p> <p>제 8 장 연 회</p> <p>제 1 절 연 회</p> <p>【587】 제87조(연회)</p> <p>①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호남연회, 미주특별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개정></p> <p>② 제1항에 규정된 연회를 5~6개 연회로 재편한다. 다만, 연회 명칭,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u>2027년</u>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u>2028년</u> 총회부터 시행한다. <개정></p>

17. 입법의회 대표 여성 및 50세 미만 15% 선출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4 편 의회법</p> <p>제 4 장 지방회</p> <p>【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⑯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 한다.</p>	<p>제 4 편 의회법</p> <p>제 4 장 지방회</p> <p>【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⑯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 한다.</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 집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및 지방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 연합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따라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 입법의학회의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 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p>	<p>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 집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및 지방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 연합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따라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의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p> <p><개정></p>

18. 지방회 안에 연합교회학교 운영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4 장 지방회</p> <p>【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제 4 장 지방회</p> <p>【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⑯ 지방회는 필요시 지방회 안에 연합교회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신설></p>

19.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연회 부서기 포함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4 편 의회법</p> <p>제 8 장 연 회</p> <p>【602】 제102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p> <p>①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 연회 서기, 감리사, 지방회별로 선출한 평신도 각 1명,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위원장,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위원장,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위원장, 과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남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회연합회 회장으로 조직한다.</p>	<p>제 4 편 의회법</p> <p>제 8 장 연 회</p> <p>【602】 제102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p> <p>①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 연회 서기, 부서기, 감리사, 지방회별로 선출한 평신도 각 1명,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위원장,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위원장,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위원장, 과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남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회연합회 회장으로 조직한다. <개정></p>

20.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연회에서 실시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p>【297】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감리사는 연회에서 지방회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하며 연회에서 취임한다.</p>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p>【297】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선거권자는 당해연도 연회에 참석할 지방회별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로 한다. <신설></u></p>
제 4 편 의회법 제 8 장 연 회 제 1 절 연 회 <p>【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⑭ 연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u>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u></p> <p>⑮ <생략></p> <p>⑯ 연회는 조직과 행정법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취임식을 거행한다.</p>	제 4 편 의회법 제 8 장 연 회 제 1 절 연 회 <p>【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⑭ 연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u>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u></p> <p>⑮ <현행과 같음></p> <p>⑯ <현행과 같음></p>
제 9 장 총 회 제 1 절 총 회 <p>【629】 제12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③ <u>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u></p>	제 9 장 총 회 제 1 절 총 회 <p>【629】 제12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③ <삭제></p>

21. 선거일정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1 장 총 칙	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1 장 총 칙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 총회 6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p> <p>①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u>선거일</u>을 기준으로 70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필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u>선거일 60일</u> 전부터 시작한다.</p>	<p>【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 총회 6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p> <p>①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u>총회를</u> 기준으로 70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필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u>후보자로 확정 되어 기호를 부여 받은 후</u>부터 시작한다. <개정></p>
<p>【16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p> <p>⑧ <u>제주도 투표분소의 선거관리를 위해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임시 선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u></p>	<p>【16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p> <p>⑧ <삭제></p>
<p>【1608】 제8조(간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원 중에서 <u>간사 1명을</u> 위촉하여 선관위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p>	<p>【1608】 제8조(간사)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원 중에서 <u>1명, 연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연회 총무를 간사로</u> 위촉하여 선관위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개정></p>
<p>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p> <p>【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p> <p>③ <u>선거일 70일 전에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u></p> <p>【1614】 제14조(선거권)</p> <p>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u>1년급 이상 교역자</u>(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u>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u>로 한다.</p> <p>④ <u>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u></p> <p>⑤ <u>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선거권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출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연회 회원</u> 2. <u>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 연장자 순</u> 3. <u>연회 회원 외 권사로 임명된 연도 순, 연장자 순</u> 4. <u>연회 회원 외 집사로 임명된 연도 순, 연장자 순</u> 5. <u>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u> <p>【1615】 제15조(선거인 명부)</p> <p>① 각 연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를 결정하여 <u>선거 90일 전에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u></p> <p>② 선관위는 <u>선거 50일</u>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p>	<p>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p> <p>【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p> <p>③ <u>총회 70일 전에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개정></u></p> <p>【1614】 제14조(선거권)</p> <p>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과 <u>연회 평신도 대표</u>로 한다. <개정></p> <p>④ <삭제></p> <p>⑤ <삭제></p>
	<p>【1615】 제15조(선거인 명부)</p> <p>① 각 연회 <u>실행부위원회</u>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를 <u>총회 90일 전에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u></p> <p>② 선관위는 <u>총회 80일</u>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선거 30일 전까지 확정한다.</p>	<p>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총회 60일 전까지 확정한다. <개정></p>
<p>【1616】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후보자의 성명, 소속, 생년월일, 사진, 학력, 경력, 정책, 최근 2년 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p>	<p>【1616】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후보자의 성명, 소속, 생년월일, 사진, 학력, 경력, 정책, 최근 2년 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p>
<p>제 4 장 후보자의 등록</p>	<p>제 4 장 후보자의 등록</p>
<p>【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p> <p>④ 선관위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일 60일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p>	<p>【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p> <p>④ 선관위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총회 60일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개정></p>
<p>【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p> <p>① 선거일 60일 전에 후보자 명단과 기호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p>	<p>【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p> <p>① 총회 60일 전에 후보자 명단과 기호를 선관위 홈페이지 및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개정></p>
<p>제 6 장 투표와 개표</p>	<p>제 6 장 투표와 개표</p>
<p>【1627】 제27조(투표소)</p> <p>①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각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제주도에 투표분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투표소에는 감독 선거 투표함과 감독회장 선거 투표함의 색을 달리하여 설치한다.</p> <p>③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를 개시하기 전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봉한다.</p>	<p>【1627】 제27조(투표일시)</p> <p>① 선관위는 연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일은 연회 둘째날 오전으로 한다. <개정></p> <p>②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 <개정></p> <p>③ <이동></p> <p>④ <이동></p>
	<p>【0000】 제28조(투표방법)</p> <p>① 감독·감독회장 선거 투표방법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신설></p> <p>② 투표소에 감독 선거 투표함과 감독회장 선거 투표함의 색을 달리하여 설치한다.</p> <p>③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를 개시하기 전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봉한다.</p>
<p>【1634】 제34조(전자투표)</p> <p>① ~ ② <생략></p> <p>③ 투표시간은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p>	<p>【1634】 제34조(전자투표)</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개정></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④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p> <p>⑤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른다.</p>	<p>④ <u><이동></u></p> <p>④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른다.</p>
<p>【1635】 제35조(해외거주자 투표)</p> <p>① 해외(선교)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의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의 감독회장 선거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한다.</p> <p>②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p> <p>③ 전자투표는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p> <p>④ 해외거주자 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른다.</p>	<p>【1635】 제35조(해외거주자 투표) 삭제</p>
<p>【1629】 제29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일 <u>10시</u>부터 <u>17시까지</u>로 한다.</p>	<p>【1629】 제29조(투표시간) <이동></p>
<p>【1630】 제30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u>20일</u> 이전에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문(투표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을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p>	<p>【1630】 제30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u>10일</u> 이전에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문(투표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을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u><개정></u></p>
<p>【1631】 제31조(개표)</p> <p>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장소에서 즉시 개표한다.</p> <p>② ~ ③ <생략></p>	<p>【1631】 제31조(개표)</p> <p>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장소에서 즉시 <u>연회 감독 선거 개표</u>를 한다. <u><개정></u></p> <p>② 감독회장 선거 투표함은 연회에서 보관하고, 개표는 마지막 선거일 투표 마감 후 동시에 실시한다. <u><신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1633】 제33조(투표와 개표의 관리)</p> <p>③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1명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p> <p>④ 선거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p>	<p>【1633】 제33조(투표와 개표의 관리)</p> <p>③ 후보자는 투(개)표소마다 1명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u><개정></u></p> <p>④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p>
	<p>부 칙 (2025. 10. 30)</p>
	<p>【0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0000】 제2조(경과조치) 제37회 총회 감독선거는 이전 법을 따른다.</p>

22. 입법의회 의안 발의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4 편 의회법	제 4 편 의회법
제 10 장 입법의회	제 10 장 입법의회
<p>【644】 제14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u>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u> 상정한다.</p> <p>①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 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p> <p>②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p> <p>③ 발의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p> <p>④ 평신도단체 및 종회위원회, 연회, 본부 행정부서에서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p> <p>⑤ 6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한 헌법 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을 <u>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 경우</u>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한다.</p> <p>⑥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50명 이상의 찬성하는 입법의회 회원과 연서하여 입법의회 개회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644】 제14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u><개정></u></p> <p>① 장정개정위원회 <u>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발의한</u> 헌법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 <u><개정></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의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 평신도단체 및 종회위원회, 연회, 본부 행정부서에서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 입법의회 분과위원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 <p>②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은 <u>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입법의회에</u> 상정한다. <u><개정></u></p> <p>③ 6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한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은 <u>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u>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u><개정></u></p> <p>④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50명 이상의 찬성하는 입법의회 회원과 연서하여 입법의회 개회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23. 장정개정위원회 시행세칙 및 구성원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10 장 입법의회	제 10 장 입법의회
<p>【647】 제14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p> <p>⑧ 장정개정위원회 :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입법의회에 상정할 법안 <u>확정</u> 및 장정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u>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u> 장정개정의 연속성을 위해 8명(교역자 4명, 평신도 4명)은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p>	<p>【647】 제14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p> <p>⑧ 장정개정위원회 :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입법의회에 상정할 법안 및 장정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종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u><개정></u></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의에서 정한다. 다만, 연회 총무는 장정개정위원회 으로 선출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출직 위원 : 연회별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임명직 위원 :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교역자 1명, <u>평신도</u> 1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출직 위원 : 연회별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여성, 50세 미만 포함) <개정> 임명직 위원 :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교역자 1명과 <u>법조인</u> 1명 <개정>

24. 연회 내규 인준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4 편 의회법</p> <p>제 11 장 총회 실행부위원회</p> <p>【650】 제15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⑥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p>	<p>제 4 편 의회법</p> <p>제 11 장 총회 실행부위원회</p> <p>【650】 제15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⑥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연회 내규 인준 <개정></p>

25. 유지재단에 편입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5 편 교회 경제법</p> <p>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p> <p>【889】 제2조(교회 부동산의 소유권)</p> <p>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 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 할 수 있다.</p> <p>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관리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관계교회 관리부에 위탁 하여 관리케 하며, 교회 분규로 인하여 교회 재산의 관리권 다툼이 발생한 때에 감리회를 이탈 한 측에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p>	<p>제 5 편 교회 경제법</p> <p>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p> <p>【889】 제2조(교회 부동산의 소유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유지재단에 편입된 부동산은 감리회 퇴회, 교회 분규, 분열 등의 사유로 교회 재산의 관리권 다</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통이 발생한 경우, 감리회를 이탈하거나 소속을 상실한 측은 해당 부동산의 관리권이 자동 소멸되며,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p> <p>④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의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신설></p>

26. 은급기여금 연체가산금 이율 하향 조정 : 법정 최고이율 → 연 2%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6 편 교역자은급법</p> <p>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p> <p>【1220】 제20조(납입방법)</p> <p>② 교역자은급기여금</p> <p>5. 현재까지 납입되지 못한 교역자은급기여금은 5년(2026년까지)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u>법정 최고이율로 가산하여 납입한다.</u></p>	<p>제 6 편 교역자은급법</p> <p>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p> <p>【1220】 제20조(납입방법)</p> <p>② 교역자은급기여금</p> <p>5. 현재까지 납입되지 못한 교역자은급기여금은 2026년까지 완납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u>연 2%의 연체가산금을 부과한다.</u> <개정></p>
<p>제 6 장 보칙</p> <p>【1225】 제25조(신은급법과의 관계)</p> <p>③ 미납된 기여금은 5년(2026년까지)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5년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u>법정 최고이율의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u></p>	<p>제 6 장 보칙</p> <p>【1225】 제25조(신은급법과의 관계)</p> <p>③ 미납된 기여금은 2026년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u>연 2%의 연체가산금을 부과한다.</u> <개정></p>

27. 은급제도 홍보 신설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6 장 보 칙</p> <p>【1224】 제24조(부대사업) 은퇴교역자와 그 부인들을 위한 주택사업, 묘지사업 및 복지사업을 은급부에서 시행한다.</p>	<p>제 6 장 보 칙</p> <p>【1224】 제24조(부대사업 및 홍보)</p> <p>① 은퇴교역자와 그 부인들을 위한 주택사업, 묘지사업 및 복지사업을 은급부에서 시행한다.</p> <p>② 준회원 및 정회원 교육 시 은급제도와 국민연금의 이해를 돋는 교육을 권장한다. <신설></p>

28. 원로원 운영관리 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편 교회 경제법</p> <p style="text-align: center;">7.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원 운영관리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103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u>(이하 ‘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 정관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운 주안원로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편 교역자은급법</p> <p style="text-align: center;">3. 교역자은급재단 원로원 운영관리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재단</u>(이하 ‘교역자은급재단’이라 한다.)이 주안원로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p>
<p>【1039】 제2조(관리권) 원로원의 운영관리는 <u>사회복지재단</u>이 사회의 결정에 따라 <u>원로원장이</u> 관장한다.</p>	<p>【0000】 제2조(관리권) 원로원의 운영관리는 <u>교역자은급재단</u>이 사회의 결정에 따라 <u>사무국 총무가</u> 관장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입주 및 퇴원</p> <p>【1043】 제6조(입주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입주순위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u>사회복지재단</u>에서 별도로 정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입주 및 퇴원</p> <p>【0000】 제6조(입주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순위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u>교역자은급재단</u>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p>【1046】 제9조(퇴원) 입주자가 제8조(입주자 수칙)의 각 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입주기간)에 의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퇴원하여야 한다.</p>	<p>【0000】 제9조(퇴원) 입주자가 제8조(입주자 수칙)의 각 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입주기간)에 의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퇴원하여야 한다. <u>퇴원 시 지금 거주하는 호실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u>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운영 및 관리</p> <p>【1047】 제10조(관리비) 원로원의 건물 유지에 따른 수리비나 공동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u>사회복지재단</u>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운영 및 관리</p> <p>【0000】 제10조(관리비) 원로원의 건물 유지에 따른 수리비나 공동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u>교역자은급재단</u>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p>
<p>【1048】 제11조(친목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주자들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입주자 친목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입주세대 세대주로 한다. ③ 친목회 회칙과 중요사업계획은 <u>사회복지재단</u>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운영상황을 <u>사회복지재단</u>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친목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u>연임할 수 없다.</u> 다만, 격년으로 할 수는 있다. ⑤ 친목회 회칙은 <u>사회복지재단</u>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0000】 제11조(친목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주자들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입주자 친목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입주세대 세대주로 한다. ③ 친목회 회칙과 중요사업계획은 <u>교역자은급재단</u>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운영상황을 <u>교역자은급재단</u>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친목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개정> ⑤ 친목회 회칙은 <u>교역자은급재단</u>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1050】 제13조(예배 및 현금 집행) 원내의 공식예배는 <u>사회복지재단</u> 의 승인을 받아 친목회가 주관한다. 예배에서 모아진 현금은 선교, 봉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u>사회복지재단</u> 의 승인을 받아 <u>사무국</u> 이 집행한다.	【0000】 제13조(예배 및 현금 집행) 원내의 공식예배는 <u>교역자은급재단</u> 의 승인을 받아 친목회가 주관한다. 예배에서 모아진 현금은 선교, 봉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u>교역자은급재단</u> 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개정>
【1051】 제14조(위문) 입주자에 대한 위문은 <u>사무국</u> 이 관리한다.	【0000】 제14조(위문) 입주자에 대한 위문은 <u>교역자은급재단</u> 이 관리한다. <개정>
【1052】 제15조(규칙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u>사회복지재단</u>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0000】 제15조(규칙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u>교역자은급재단</u>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9. 분사무소 설치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5 편 교회 경제법	제 5 편 교회 경제법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정관 <p>【1143】 제2조(관리, 소재지) 본 법인은 감리회 본부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으로 한다.</p>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정관 <p>【1143】 제2조(관리, 소재지) 본 법인은 감리회 본부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으로 한다. 다만, <u>재단이사회</u>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p>
제 6 편 교역자은급법	제 6 편 교역자은급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p>【1242】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이라 칭한다.</p>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p>【1242】 제2조(소재지)</p> <p>①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에 둔다. <개정></p> <p>② 다만, 재단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신설></p>
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	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
2. 도서출판kmc 정관 <p>【2013】 제3조(위치) 본사는 감리회 본부가 위치한 <u>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u> 감리회관 내에 둔다.</p>	2. 도서출판kmc 정관 <p>【2013】 제3조(위치) 본사는 감리회 본부가 위치한 감리회관 내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지점(분사무소)을 둘 수 있다. <개정></p>

30. 재판법 범과, 기탁금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7 편 재판법	제 7 편 재판법
제 1 장 일반 재판법	제 1 장 일반 재판법
제 1 절 총 칙	제 1 절 총 칙
<p>【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생략></p> <p>② <u>계교로써</u>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p> <p>③ <생략></p> <p>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사위원회 등에 무고를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p> <p>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p> <p>⑥ ~ ⑯ <생략></p>	<p>【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의로</u>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u><개정></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고의로</u>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사위원회 등에 무고를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u><개정></u></p> <p>⑤ <u>교회를 혼란하게 할 목적으로</u>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u><개정></u></p> <p>⑥ ~ ⑯ <현행과 같음></p>
<p>【1404】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 ⑤ <생략></p> <p><u>⑥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u></p> <p>⑦ ~ ⑯ <생략></p>	<p>【1404】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u>⑥ <삭제></u></p> <p>⑦ ~ ⑯ <현행과 같음></p> <p><u>⑯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된 부동산에 대하여 교단탈퇴를 이유로 유지재단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반환 청구 등 소유권을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을 때 <신설></u></p>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p>【14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p> <p>① ~ ④ <생략></p> <p>⑤ ~ ⑦ <생략></p>	<p>【14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⑤ 기탁금은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u></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31. 재판위원회 구성은 연회 분과위원회 조직과 재판법의 재판위원회 구성으로 이동하여 통합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편 의회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편 의회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연 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연 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연 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연 회</p>
<p>【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⑦ 연회는 연회 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장로와 전도사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u>심사위원회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u>,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소지자 등) 2명과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소지자 등) 2명으로 <u>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⑧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u>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u>과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소지자 등) 2명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편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597】 제97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p> <p>⑪ 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소지자 등) 2명으로 구성한다.</p> <p>⑫ 재판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고소·고발사건을 재판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소지자 등) 2명으로 구성한다.</p>	<p>【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⑦ 연회는 연회 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장로와 전도사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u>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u></p> <p>⑧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p> <p>【597】 제97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p> <p>⑪ 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u>10명(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u>,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소지자 등) 2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p> <p>⑫ 재판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고소·고발사건을 재판한다. 위원회는 <u>10명(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u>,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소지자 등) 2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⑭ 행정재판위원회 :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 법 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소지자 등) 2명으로 구성한다.</p>	<p>⑭ 행정재판위원회 :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 법 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소지자 등) 2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p>
<p>제 9 장 총 회</p> <p>제 1 절 총 회</p>	<p>제 9 장 총 회</p> <p>제 1 절 총 회</p>
<p>【629】 제12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⑭ 총회 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p> <p>⑮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p> <p>⑯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회추천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전문인으로 한다.</p> <p>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조인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회추천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총회 심사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당부재판을 신청한 경우, 감독회장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위원 이외의 법조인 3명을 지명하여 담당하게 한다.</p> <p>⑯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p> <p>⑯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44명(교역자 22명, 평신도 22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p>	<p>【629】 제129조(총회의 직무) 총 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⑭ 총회 심사위원회, 총회 특별심사위원회, 총회 재판위원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p> <p>⑯ <삭제></p>

32. 재판위원회에서 화해조정절차 진행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7 편 재판법</p> <p>제 1 장 일반 재판법</p> <p>【1413】 제13조(조정회부 및 심사회부)</p> <p>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그 사건을 14일 내에 <u>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u>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u>화해조정결정은 고소·고발장을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u></p> <p>③ <u>화해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의회의 장은 조정 불성립 통지를 받은 즉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u></p> <p>【1434】 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한다.</p>	<p>제 7 편 재판법</p> <p>제 1 장 일반 재판법</p> <p>【1413】 제13조(심사회부)</p> <p>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그 사건을 14일 내에 <u>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u>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p> <p>② <삭제></p> <p>③ <삭제></p> <p>【1434】 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한다.</p> <p>⑧ <u>재판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재판위원회가 화해조정기일을 정하고 화해조정절차를 진행한다.</u> <신설></p>
<p>제 2 장 행정 재판법</p> <p>【1499】 제13조(화해조정)</p> <p>① 행정재판위원회는 <u>당사자 쌍방의 요청이나 행정 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u> 화해조정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며, <u>화해조정 결정은 화해조정위원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u></p> <p>② 행정재판위원회 및 <u>화해조정위원회의</u> 조정안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p>	<p>제 2 장 행정 재판법</p> <p>【1499】 제13조(화해조정)</p> <p>① 행정재판위원회는 행정재판위원회의 <u>직권 또는</u> 당사자의 <u>신청으로 적당하다고</u> 판단되는 시점에서 <u>화해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u> <신설></p> <p>② 행정재판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p>

◆ 관련 조항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4 편 의회법</p> <p>제 4 장 지방회</p> <p>【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⑤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고 재판 및 <u>화해조정</u>하기 위해 심사위원 10명(교역</p>	<p>제 4 편 의회법</p> <p>제 4 장 지방회</p> <p>【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⑤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고 재판하기 위해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및 화해조정위원 6명(교역자 3명, 평신도 3명)을 선출한다.</p> <p>⑩ 교인,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이 필요할 때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고소·고발하기 전에 지방회 화해조정위원회에 화해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화해조정위원회의 직무, 조정 중재의 착수, 성실 어행 의무는 연회 화해조정위원회에 준한다.</p>	<p>도 5명)과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선출한다. <u>〈개정〉</u></p> <p>⑩ 교인,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이 필요할 때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u>〈개정〉</u></p>
<p>【554】 제54조(지방회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직무) 지방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 ⑦ <생략></p> <p>⑧ <u>화해조정위원회</u> : 지방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을 화해조정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3명, 평신도 3명으로 구성한다.</p>	<p>【554】 제54조(지방회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직무) 지방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연회</p> <p>【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⑤ <u>연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조정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기 위해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u></p> <p>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12. <u>연회는 총회 화해조정위원회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연회</p> <p>【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⑤ <삭제></p> <p>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12.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연회 화해조정위원회</p> <p>【605】 제105조(연회 화해조정위원회) 연회는 화해조정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이 고소·고발 및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조정 중재하여 타협하고 화해하도록 노력한다.</p>	<p><삭제></p>
<p>【606】 제106조(연회 화해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다.</p>	<p><삭제></p>
<p>【607】 제10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608】 제108조(직무) 연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재한다.</p> <p>② 연회 내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기 전에 화해조정하며 인사, 행정에 수반되는 분쟁을 조정하며 바로잡는다.</p> <p>③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사건을 조정 중재하며 타협, 화해성립에 노력한다.</p> <p>④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p>	<삭제>
<p>【609】 제109조(조정 중재의 착수)</p> <p>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사건을 의뢰할 때</p> <p>② 지방회에서 조정 중재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때 감독이 직권상 착수한다.</p> <p>③ 부당한 인사 또는 행정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시정을 요구했을 때</p> <p>④ 민사,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할 때. 다만, 민사, 형사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다.</p> <p>⑤ 조정, 중재는 고소·고발 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착수해야 한다.</p> <p>⑥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삭제>
<p>【610】 제110조(성실 이행 의무) 당사자는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감독이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p>	<삭제>
<p>제 9 장 총 회</p> <p>【629】 제12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 총회 화해조정위원회는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p>	<p>제 9 장 총 회</p> <p>【629】 제12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 <삭제></p>
<p>제 12 장 총회 특별위원회</p> <p>【652】 제152조(총회 특별위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p>	<p>제 12 장 총회 특별위원회</p> <p>【652】 제152조(총회 특별위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특별위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p> <p>① <u>화해조정위원회</u></p>	<p>특별위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p> <p>① <삭제></p>
<p><u>제 1 절 화해조정위원회</u></p> <p>【653】 제153조(총회 화해조정위원회) 총회는 화해조정 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화해 성립을 위해 노력한다.</p>	<p><삭제></p>
<p>【654】 제154조(총회 화해조정위원회의 구성) 총회 화해조정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선임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p>	<p><삭제></p>
<p>【655】 제155조(임기) 총회 화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삭제></p>
<p>【656】 제156조(직무)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연회에서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재한다.</p> <p>② 총회 내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기 전에 화해조정하며, 부당한 인사 및 행정 분쟁을 조정하여 바로잡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타협, 화해 성립에 노력한다.</p> <p>③ 그 밖에 행정상 법률관계로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심리 조정한다.</p>	<p><삭제></p>
<p>【657】 제157조(조정 중재의 착수)</p> <p>① 연회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해당 연회 감독이 감독회장에게 요청했을 때</p> <p>② 민사, 형사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다.</p> <p>③ 조정, 중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착수 해야 한다.</p> <p>④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p><삭제></p>
<p>【658】 제158조(성실 이행의 의무) 당사자는 화해조정 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 감독회장은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p>	<p><삭제></p>

33. 선거법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p>【1604】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p>	<p>【1604】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u>구성 및</u> 설치) 총회는 공정한 선거를 <u>관리하며</u>,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u>구성하여 설치한다.</u> <개정></p>
<p>【16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p> <p>⑦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u>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u>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6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p> <p>⑦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 <u>및 시행 세칙</u>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p>
<p>【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후보 등록한 이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후보자를 확정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다.</p> <p>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u>특별심사위원회</u>에 고발하여야 한다.</p> <p>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의분과, 관리분과,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u>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u>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 관리분과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선거 공고,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투표소 설치 등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3. 홍보분과위원회는 선거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운영,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의 심의, 제작, 배포업무를 주관한다. 	<p>【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후보 등록한 이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후보자를 확정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다.</p> <p>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u>특별심사위원회</u>에 <u>고발할 수 있다.</u> <개정></p> <p>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의분과, 관리분과,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 관리분과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선거 공고,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u>전자투표업체 선정</u>,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투표소 설치 등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3. 홍보분과위원회는 선거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운영,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의 심의, 제작, 배포업무를 주관한다.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p>【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p> <p>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회 재정 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 개시 30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p>	<p>【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p> <p>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회 재정 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 개시 30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 및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개정></p>
<p>【1613】 제13조(피선거권)</p> <p>① ~ ⑩ <생략></p> <p>⑪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p> <p>⑫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p> <p>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한다</p> <p>⑭ 선거공보에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다.</p>	<p>【1613】 제13조(피선거권)</p> <p>① ~ ⑩ <현행과 같음></p> <p>⑪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재·보궐선거 포함)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p> <p>⑫ <현행과 같음></p> <p>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한다. (미주특별 연회는 제외) <개정></p> <p>⑭ 선거공보에 5년 이내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다. <개정></p>
제 5 장 선거운동	제 5 장 선거운동
<p>【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p> <p>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p> <p>② ~ ④ <생략></p> <p>⑤ <u>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는 연회, 지방회, 연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 총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에서 주최하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합동정책 발표회를 진행하여야 한다.</u></p> <p>⑥ 감독 후보 합동정책발표회는 연회 주최로 2회 진행한다.</p> <p>⑦ 감독회장 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권역별로 3회 진행하여야 한다.</p> <p>⑧ <u>합동정책 발표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주최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u></p>	<p>【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p> <p>① 후보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선거운동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개정></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삭제></p> <p>⑥ 감독 후보 합동정책발표회는 연회에서 2회 진행한다.</p> <p>⑦ 감독회장 후보 합동정책발표회는 권역별로 3회 진행한다.</p> <p>⑧ <삭제></p>
<p>【1624】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 후보로 등록 할 이는 선거시행공고 전까지 다음 각 항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p> <p>① 출마를 공식화하여 활동하는 행위(SNS 활동 포함)</p> <p>② ~ ④ <생략></p>	<p>【1624】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 후보로 등록 할 이는 선거시행공고 전까지 다음 각 항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p> <p>① 출마를 공식화하여 활동하는 행위 <개정></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1625】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p> <p>①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선관위가 <u>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흥보물을 배포하는 행위</u></p>	<p>【1625】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p> <p>①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선관위가 <u>정한 절차나 방법이 아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u> <개정></p>
<p>【1626】 제26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p> <p>① 후보자나 선거권자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p> <p>② <u>선거감시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선관위에 보고하고, 해당 선관위는 위법한 선거운동을 자체 없이 중지시키고 총회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u>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u>자체 없이</u>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1626】 제26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p> <p>① 후보자나 선거권자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p> <p>② <u>연회</u> 선관위는 위법한 선거운동을 자체 없이 중지시키고 총회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p> <p>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p>
<p>【1637】 제37조(재정)</p> <p>⑤ 선거비용을 결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u>은급기금으로</u> 전환한다.</p>	<p>【1637】 제37조(재정)</p> <p>⑤ 선거비용을 결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u>은급기금 70%, 장학재단 30%</u>로 전환한다. <개정></p>
<p>제 7 장 보 칙</p> <p>【1640】 제40조(별칙 처벌)</p> <p>① ~ ⑪ <생략></p>	<p>제 7 장 보 칙</p> <p>【1640】 제40조(별칙 처벌)</p> <p>① ~ ⑪ <생략></p> <p>⑫ <u>금권 선거를 제보한 자는 허위 제보가 아닌 이상 신분이 보호된다.</u> <신설></p>

34. 미주특별연회, 서부선교연회 경계법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9 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p> <p><별표> 연회 경계</p> <p>【1733】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미주자치연회 경계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에 준한다. 다만, 미주자치법이 「교리와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p>	<p>제 9 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p> <p><별표> 연회 경계</p> <p>【1733】 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 미주특별연회 경계는 남가주, 미동남부, 미동부, 미동북부, 미서남부, 미서북부, 미중남부, 미중북부, 중남미, 캐나다동부, 캐나다서부 11개 지방회로 한다. <개정></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1735】 제13조(서부선교연회 경계) 서부선교연회 경계는 평양동, 평남, <u>평북서</u> , <u>동북선교</u> , 개성, 개성남, <u>함남</u> , <u>양강</u> , 남포, 황남동, 황남서, 황북동, 황북서, <u>평남북</u> , <u>강원남</u> , <u>강원북</u> , 평북동, 자강, 평양서, <u>함남북</u> , 함북남, 함북 <u>22개</u> 선교관리지방회로 한다.	【1735】 제13조(서부선교연회 경계) 서부선교연회 경계는 평양동, 평남, <u>평북</u> , 개성, 개성남, 남포, 황남동, 황남서, 황북동, 황북서, <u>평남동</u> , <u>강원</u> , 평북동, 자강, 평양서, <u>함남</u> , <u>함북</u> , <u>함북남</u> <u>18개</u> 선교관리지방회로 한다. <개정>
	부 칙 (2025. 10. 30)
	【0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정회원 연수과정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10 편 과정법 제 6 장 정회원 연수과정 【1831】 제31조(연회 정회원 연수과정) 정회원 연수과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제 10 편 과정법 제 6 장 정회원 연수과정 【1831】 제31조(연회 정회원 연수과정) 정회원 연수과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⑥ 제6과정 : 목회자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과 목회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상목회교육(CPE)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한다. <신설>

36. 외국인 선교사 신설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11 편 특별법 및 임시조치법 5) 외국인 선교사 파송에 관한 특별법 <신설> 【0000】 제1조(외국인 선교사 파송) 감리회는 개체교회 사역을 위해 외국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0000】 제2조(외국인 선교사의 인준) 외국인 선교사는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감리회 본부 선교국 선교사인준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인준한다.
	【0000】 제3조(외국인 선교사의 사역) 외국인 선교사는 개체교회 구역담임자의 감독과 지도를 받으며, 사역의 범위는 개체교회 교회학교, 청소년 사역, 이주민 사역, 다문화 사역 등으로 제한한다.

현 행	개 정 된 장 정
	<u>【0000】 제4조(외국인 선교사의 신분) 외국인 선교사로 파송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종교비자(G-1 또는 D-6 등)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자로 한다.</u>
	<u>【0000】 제5조(외국인 선교사의 자격과 구분) 외국인 선교사는 감리회의 진급 제도(서리, 준회원, 정회원, 은급 등)에 따른 목회자 직무와 무관하며, 목회자가 아닌 외국인 선교사의 자격으로 사역한다.</u>
	<u>【0000】 제6조(시행세칙) 본 특별법은 「교리와 장정」의 세계선교사 관리규정과 별개로 적용되며, 필요 한 세부 시행세칙은 선교국에서 정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u>
	<u>부 칙 (2025. 10. 30)</u>
	<u>【0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37. 군선교회 운영위원회 조직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p> <p>4. 군선교회 정관</p> <p>제 4 장 이사회</p> <p>【2082】 제19조(운영위원회 조직) 이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두어 활동케 한다.</p> <p>① 회장 : 1명 ② 부회장 : 각 연회별 1명 ③ 총무 : 1명 ④ 상임총무 : 1명 ⑤ 서기 및 회계 : 1명 ⑥ 협동총무(선교국 실무부장 당연직) ⑦ 부장 : 5~7명(전도, 교육, 정책, 지원, 회원) ⑧ 감사 : 이사회 감사가 겸임한다.</p>	<p>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p> <p>4. 군선교회 정관</p> <p>제 4 장 이사회</p> <p>【2082】 제19조(운영위원회 조직) 이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두어 활동케 한다.</p> <p>① 회장 : 1명 ② 부회장 : 각 연회별 1명 ③ 총무 : 1명 ④ 상임총무 : 1명(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⑤ 서기 및 회계 : 1명 ⑥ 협동총무(선교국 실무부장 당연직) ⑦ 부장 : 5~7명(전도, 교육, 정책, 지원, 회원) ⑧ 감사 : 이사회 감사가 겸임한다. ⑨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p>

38. 청년관 및 청장년관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 7. 청년관 및 청장년관 운영이사회 규칙 <p>【2137】 제12조(결의) 모든 의회의 결의는 <u>재적회원</u>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이사장과 관장 선출을 위한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한다.</p> <p>【2149】 제24조 이사회는 청년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내규' 및 '분과위원회 회칙'을 만들 수 있으나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 7. 청년관 및 청장년관 운영이사회 규칙 <p>【2137】 제12조(결의) 모든 의회의 결의는 <u>재선택회원</u>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이사장과 관장 선출을 위한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한다.</p> <p>【2149】 제24조 이사회는 청년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내규' 및 '분과위원회 회칙'을 만들 수 있으나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넘어서 수 없고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p>
	부 칙 (2025. 10. 30) <p>【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39. 큐어신학 이단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 13.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부 칙 (2025. 10. 30) <p>【0000】 제1조 제36회 총회에서 큐어신학을 이단으로 결의하여, 큐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한다.</p>	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 13.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부 칙 (2025. 10. 30) <p>【0000】 제1조 제36회 총회에서 큐어신학을 이단으로 결의하여, 큐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한다.</p>

40. 교회학교 규정 및 규칙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 5. 교회학교 규정 제 1 장 목적과 조직 <p>【2090】 제2조(교회학교의 조직) ⑧ 청장년부 35세~<u>47세</u> ⑨ 장년부 <u>48세</u>~70세</p>	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 5. 교회학교 규정 제 1 장 목적과 조직 <p>【2090】 제2조(교회학교의 조직) ⑧ 청장년부 35세~<u>49세</u> <개정> ⑨ 장년부 <u>50세</u>~70세 <개정></p>
자치단체 규칙 3.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자치단체 규칙 3.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p>【2447】 제10조(임원의 임기와 자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비가 총회 <u>일개월 전까지</u>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회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u>현직 지방회연합회장이</u> 총회 회원이 된다.</p>	<p>【2447】 제10조(임원의 임기와 자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비가 총회 <u>30일 전까지</u>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회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u>임기를 마친 지방회연합회 직전회장이</u> 총회 회원이 된다. <개정></p>
제 5 장 재정	제 5 장 재정
<p>【2456】 제19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u>회비</u>, 각 연합회 부담금, 사업수입금, 감리회 본부 지원금, 찬조금, 현금으로 충당한다.</p>	<p>【2456】 제19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u>임원회비</u>, 각 연합회 부담금, 사업수익금, 감리회 본부 지원금, 찬조금, 현금으로 충당한다. <개정></p>
<p>【2457】 제20조(회비 및 부담금) <u>회비</u> 및 각 연합회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p>	<p>【2457】 제20조(회비 및 부담금) <u>임원회비</u> 및 각 연합회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개정></p>
제 6 장 보칙	제 6 장 보칙
<p>【2459】 제2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u>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다만 회계연도 이후부터 총회 전까지는 감사 후 첫 번 임원회에 보고한다.</u></p>	<p>【2459】 제2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u>정기총회 다음날부터</u> 다음년도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감사 이후부터 정기총회 전까지 발생한 회계 자료는 정기총회 후 첫 번째 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p>

41. 남선교회 규칙 개정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자치단체 규칙	자치단체 규칙
<p>13.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p> <p>제 3 장 임원</p> <p>【2685】 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p> <p>① 의무: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u>총회 년도 1월 말일까지</u>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13.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p> <p>제 3 장 임원</p> <p>【2685】 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p> <p>① 의무: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u>총회 전년도 12월 말일까지</u>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p> <p>② <현행과 같음></p>
14.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14.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5 장 회의	제 5 장 회의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2721】 제16조(총회)</p> <p>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30일 전 회원에게 <u>발송하여야 한다.</u></p>	<p>【2721】 제16조(총회)</p> <p>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30일 전 회원에게 <u>우편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u>로 발송한다. <개정></p>

42. 교역자를 서리, 준회원, 정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하여 정리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제 3 편 조직과 행정법</p> <p>제 2 장 교 회</p> <p>제 7 절 <u>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u></p>	<p>제 3 편 조직과 행정법</p> <p>제 2 장 교 회</p> <p>제 5 절 <u>수련목회자</u></p>
<p>【236】 제36조(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 <u>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u>기관 파송 전도사는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군종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 그 밖의 기관에 파송 받은 전도사를 말하며, 감리사가 파송한 기관에서 맡은 일에 사역한다.</u></p> <p>② <u>수련선교사는 선교국에서 선교사 인준을 받은 이</u></p> <p>③ <u>수련목회자로 전문기관에 파송 받은 이와 수련 목회자로서 교육국의 인준을 받아 학원선교사로 파송 받은 이</u></p> <p>④ <u>군종사관후보생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연세대학교 신학계열에 입학한 후, 군종사관후보생선발고사에 합격하여 해당학 과를 졸업하고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나 연세대 학교의 신학계열 대학원에 입학한 이</u></p> <p>⑤ <u>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 및 소속기관에서는 기관 파송 전도사로 사 역할 수 없다.</u></p>	<p>【236】 제36조(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 <삭제></p> <p>① <이동></p> <p>② <이동></p> <p>③ <이동></p> <p>④ <이동></p> <p>⑤ <이동></p>
<p>【237】 제37조(수련목회자의 자격) <u>수련목회자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u>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수련목회자 고시에 합격하고 영성훈련을 마친 이</u></p> <p>② <u>장애인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 대학교에서 신학사로 졸업한 이</u></p>	<p>【237】 제37조(수련목회자의 자격) <u>수련목회자는 수련 목회자 고시에 합격하여 영성훈련을 마치고 심층면 접을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u></p> <p>② <삭제></p>
<p>【238】 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p> <p>① <u>수련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총 6명만</u></p>	<p>【238】 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p> <p>① <u>수련목회자는 입교인 50명에 1명을 파송할 수</u></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파송할 수 있다. 입교인 50명 이상의 교회에도 수련목회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p>② 수련목회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u>의결을</u>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 개체교회나 <u>전문기관</u>에 1년 동안 서리로 사역하고 연회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u>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연회 감독의 파송을 받아</u>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u>이때 준회원은</u> '전도사'로 호칭한다.</p> <p>③ <생략></p>	<p>있고, 한 교회에 총 6명까지 파송할 수 있다. <개정></p> <p>② 수련목회자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에 정회원 1명당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개정></p> <p>③ 수련목회자는 구역 및 <u>지방회</u>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 개체교회나 <u>파송 기관</u>에 1년 동안 서리로 사역하고 <u>연회 과정고시위원회 및 자격심사위원회의</u> 심사를 거쳐 <u>연회에서 준회원으로 허입하고</u>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련목회자는 '전도사'로 호칭한다. <개정></p> <p>③ <현행과 같음></p>
<p>【240】 제40조(서리담임자의 자격)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서 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은 이</p> <p>② 장애인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신학사로 졸업한 이</p> <p>③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서리담임자가 연회 준회원으로 3년 이내에 허입하지 못하면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파송하지 않는다.</p>	<p>【240】 제40조(서리담임자의 자격) <삭제></p> <p>① <이동></p> <p>② <삭제></p> <p>③ <이동></p>
<p>【241】 제41조(서리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목사로 악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다.</p> <p>② 서리담임자는 감리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p>	<p>【241】 제41조(서리담임자의 직무) <삭제></p> <p>① <이동></p> <p>② <이동></p>
<p>【242】 제42조(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 교역자 필수과목은 감리교회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설교와 신학, 웨슬리 영성수련, 웨슬리 전도와 속회운동, 목회실습(모든 학기) 6과목으로 하며,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혹은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한다.</p>	<p>【242】 제42조(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 <이동></p>
<p>【243】 제43조(감리회 교역자의 공통자격 및 제한)</p> <p>【278】 제78조(연회 회원의 생활비) 연회 회원의 생활비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u>연회 회원의 생활비는</u>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p>	<p>제 4 장 교역자</p> <p>【000】 제00조(교역자의 공통자격 및 제한)</p> <p>【000】 제00조(교역자의 생활비) 교역자의 생활비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u>교역자의 생활비는</u>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② 구역 서리 담임자와 수련목회자와 기관 파송 <u>목회자는</u> 소속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하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p>	<p>② 구역 서리 담임자와 수련목회자와 기관 파송 <u>교역자는</u> 소속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하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u><개정></u></p>
<p>【291】 제91조(교역자의 은급부담금 납입) <생략></p>	<p>【000】 제00조(교역자의 은급부담금 납입) <현행과 같음></p>
<p>【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 <생략></p>	<p>【000】 제00조(교역자의 은퇴) <현행과 같음></p>
<p><u>제 1 절 연회 회원</u></p>	<p><u>제 1 절 서리 <신설></u></p>
<p>【275】 제75조(연회 회원의 구분) 교역자는 소속연회의 회원이 되며 그 자격과 신분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한다.</p>	<p>【275】 제75조(연회 회원의 구분) <이동></p>
<p>【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p>	<p>【000】 제00조(서리의 정의와 자격) 서리는 구역 및</p>
<p>① ~ ⑦ <생략> ⑧ <생략> ⑨ 신학사 학위가 없는 이는 신학기초과목(30학점)과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들은 감리회의 3개 신학대학교 대학원과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교의 신학석사학위 과정 모든 학기에 감리회 목회실습을 받고 담임목사의 평가를 받아 소속 학교에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학교는 학기말 평가 후 감리회 본부(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지방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개체교회 또는 기관에서 사역하며 진급과정 중에 있는 이를 말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신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이동> ⑧ 신학사 학위가 없는 이는 신학기초과목(30학점)과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⑨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은 감리교회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설교와 신학, 웨슬리 영성수련, 웨슬리 전도와 속회운동, 목회실습(모든 학기) 6과목으로 하며,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혹은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들은 감리회의 3개 신학대학교 대학원과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교의 신학석사학위 과정 모든 학기에 감리회 목회실습을 받고 담임목사의 평가를 받아 소속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u><개정></u></p>
	<p>【000】 제00조(서리의 구분) 서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리담임자 : 개체교회 담임자로 파송 받은 이 ② 수련목회자 : 수련목회자 고시에 합격하고 개체교회 또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가 인준한 기관에 파송 받은 이 ③ 학원수련선교사 : 수련목회자 고시에 합격하고 교육국에서 학원선교사 인준을 받은 이 ④ 수련선교사 : 선교국에서 선교사 인준을 받은 이 ⑤ 군종사관후보생 :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생으로 군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종사관후보생선발고사에 합격하고 해당학과를 졸업한 이</p> <p>【000】 제00조(서리의 파송) 서리의 파송은 다음과 같다. <신설></p> <p>① 서리담임자, 수련목회자, 학원수련선교사, 수련 선교사는 서리 및 해당 자격을 갖춘 후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리사의 파송을 받고 1년간 서리로 사역한다. <신설></p> <p>② 군종사관후보생은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서리파송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서리로 사역한다. <신설></p> <p>③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 및 소속기관에서는 사역할 수 없다. <이동></p> <p>④ 서리담임자가 연회 준회원으로 3년 이내에 허입하지 못하면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파송하지 않는다. <이동></p>
<p>【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 중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감리사의 파송을 받고 1년간 서리로 사역한 후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다.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다.</p> <p>1. 개체교회 서리담임자</p> <p>2.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 수련목회자와 학원수련선교사</p> <p>3. 수련선교사(선교국 선교사 인준자)</p> <p>4. 군종사관후보생(선발고사 합격자)</p> <p>⑪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감독의 파송을 받아 과정법에 따라 2년간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⑫ 수련목회자 혹은 기관 파송 전도사로 연회 준회</p>	<p>【276】 제76조(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준회원은 서리로 사역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허입한 교역자를 말한다. <개정></p> <p>① 서리담임자, 수련목회자, 학원수련선교사, 수련 선교사는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허입한다. <개정></p> <p>② 군종사관후보생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허입한다. <개정></p> <p>③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5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p> <p>⑫ <이동></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원 과정을 마쳤으나 연회 전까지 파송지를 결정하지 못하여 목사안수를 받지 못한 이는 자격을 준필로 하되 파송지가 결정된 후 처음 열리는 연회에서 안수를 받는다.</p> <p>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⑯ <이동></p>
【277】 제77조(연회 준회원의 직무) <생략>	【277】 제77조(준회원의 직무) <현행과 같음>
<p>【279】 제7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u>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u>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u>세계선교사</u>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으며, <u>군종사관후보생</u>은 담임목사와 감리사, 군선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서리파송을 받은 후 지방회의 청원으로 당해연도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p>	<p>【279】 제7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u>연회 과정고시위원회 및 자격심사위원회의</u> 심사를 거쳐 연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개정></p> <p>①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파송지가 결정된 이. 다만, 연회 전까지 파송지를 결정하지 못한 이는 파송지가 결정된 후 처음 열리는 연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 전까지 자격은 준필로 한다. <개정></p> <p>② 세계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개정></p> <p>③ 군종사관후보생은 담임목사와 감리사, 군선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u>신학대학교</u> 졸업과 동시에 서리파송을 받은 후 지방회의 청원으로 당해연도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개정></p>
<p>【280】 제8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 이</p> <p>② 감독이 파송한 <u>개체교회나 기관에서 목회를 하</u>고 <u>입법의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에 합격한</u> 이</p> <p>③ <u>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u> 천거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u>가표를 받은</u> 이</p> <p>④ 직무수행에 방해될 정도의 채무가 없고 타인의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 이</p> <p>⑧ 협동목사는 10년 이상 흠 없이 사역하고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신학석사 혹은 목회아카데미 포함)을 이수한 이로 연회 과정 및 자격심</p>	<p>제 3 절 정회원 <신설></p> <p>【280】 제80조(정회원 허입의 자격) <u>각 항에 해당하는</u> 이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u>추천</u>으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u>찬성으로 정회원에 허입</u>한다. <개정></p> <p>①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 이</p> <p>② <삭제></p> <p>③ 목사안수를 받고 준회원 과정을 마친 이 <신설></p> <p>③ <이동></p> <p>④ <삭제></p> <p>③ 협동회원으로 10년 이상 흠 없이 사역한 이 <개정></p>

현 행	개 정 된 장 정
<p><u>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으로 정회원에 허입한다.</u></p> <p>⑤ 정회원으로 퇴회하였던 이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재허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2. 지방회의 <u>천거로</u> 본인이 퇴회한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u>가표를</u> 받아야 한다. <p>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동성연애(결혼)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p>⑦ <u>군복으로 정회원에 허입할 이는 신학대학원(Th.M. 또는 M.Div.)을 졸업하여야 한다.</u></p> <p>⑨ <u>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⑤ 정회원으로 퇴회하였던 이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재허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2. 지방회의 <u>추천을 받아</u> 본인이 퇴회한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u>찬성을</u> 받아야 한다. <p>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동성연애(결혼)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p>⑦ <u><이동></u></p> <p>⑨ <u><이동></u></p>
【282】 제8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생략>	【282】 제82조(정회원의 직무) <현행과 같음>
【281】 제81조(연회 정회원의 안식년) <생략>	【281】 제81조(정회원의 안식년) <현행과 같음>
	<u>제 4 절 협동회원 <신설></u>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283】 제83조(협동회원의 자격)
【285】 제85조(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 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은 다음 각 항과 같다.	【285】 제85조(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 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은 다음 각 항과 같다.
<p>① 협동회원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u>자격심사를 거쳐</u>,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u>찬성으로</u> 허입한다.</p> <p>② ~ ③ <생략></p>	<p>① 협동회원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u>찬성으로</u> 허입한다. <개정></p> <p>② ~ ③ <현행과 동일></p>
【286】 제86조(협동회원의 목사안수) <생략>	【286】 제86조(협동회원의 목사안수) <현행과 동일>
【284】 제84조(연회 협동회원의 직무) 연회 협동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284】 제84조(협동회원의 직무) 협동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p>① ~ ④ <생략></p>	<p>① ~ ④ <현행과 동일></p>
	<u>제 5 절 교역자 인사처리 <신설></u>
【287】 제87조(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 <생략>	【287】 제87조(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 <현행과 같음>
【289】 제89조(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생략>	【289】 제89조(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현행과 같

현 행	개 정 된 장 정
	【288】 제88조(국외 거주 교역자의 인사처리) <생략> 【290】 제90조(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 <생략> 【293】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생략>
	【288】 제88조(국외 거주 교역자의 인사처리) <현행과 같음> 【290】 제90조(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 <현행과 같음> 【293】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현행과 같음>

43. 평신도 임원(집사, 권사, 장로)을 장으로 구분하여 순서정리

현 행	개 정 된 장 정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1 장 총 칙 【201】 제1조(목적) <생략>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1 장 총 칙 【201】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 2 장 교 회 【202】 제2조(교회의 정의) <생략> 【203】 제3조(교회의 직무) <생략> 【204】 제4조(교회의 설립 등) <생략>	제 2 장 교 회 【202】 제2조(교회의 정의) <현행과 같음> 【203】 제3조(교회의 직무) <현행과 같음> 【204】 제4조(교회의 설립 등) <현행과 같음>
제 1 절 개체교회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생략> 【206】 제6조(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생략> 【207】 제7조(개체교회의 폐쇄) <생략>	제 1 절 개체교회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현행과 같음> 【206】 제6조(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현행과 같음> 【207】 제7조(개체교회의 폐쇄) <현행과 같음>
제 2 절 교 인 【208】 제8조(교인) <생략> 【209】 제9조(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 <생략> 【210】 제10조(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 <생략> 【211】 제11조(교인의 의무) <생략> 【212】 제12조(교인의 권리)	제 2 절 교 인 【208】 제00조(교인) <현행과 같음> 【209】 제9조(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 <현행과 같음> 【210】 제10조(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 <현행과 같음> 【211】 제11조(교인의 의무) <현행과 같음> 【212】 제12조(교인의 권리)
제 8 절 개체교회 담임자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생략> 【245】 제45조(담임자의 자격 구분) 개체교회 담임자 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로 구분한다.	제 3 절 개체교회 담임자 【213】 제13조(담임자의 파송) <현행과 같음> 【214】 제14조(담임자의 자격 구분) 개체교회 담임 자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서리, 협동회원로 구 분한다.
【246】 제46조(담임자의 직무) <생략>	【215】 제15조(담임자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 9 절 부담임자 【247】 제47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 <생략> 【248】 제48조(부담임자의 자격) <생략> 【249】 제49조(부담임자의 직무) <생략>	제 4 절 개체교회 부담임자 【216】 제16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 <현행과 같음> 【217】 제17조(부담임자의 자격) <현행과 같음> 【218】 제18조(부담임자의 직무)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된 장 정
【250】 제50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219】 제19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230】 제30조(심방전도사의 자격) <생략> 【231】 제31조(심방전도사의 임면) <생략> 【232】 제32조(심방전도사의 직무) <생략> 【233】 제33조(교육사의 자격) <생략> 【234】 제34조(교육사의 임면) <생략> 【235】 제35조(교육사의 직무) <생략>	【223】 제23조(심방전도사의 자격) <현행과 같음> 【224】 제24조(심방전도사의 임면) <현행과 같음> 【225】 제25조(심방전도사의 직무) <현행과 같음> 【226】 제26조(교육사의 자격) <현행과 같음> 【227】 제27조(교육사의 임면) <현행과 같음> 【228】 제28조(교육사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 10 절 개체교회 부서와 조직	제 7 절 개체교회 부서와 조직
【251】 제51조(부서의 종류) <생략> 【252】 제52조(선교부의 조직) <생략> 【253】 제53조(선교부의 직무) <생략> 【254】 제54조(속회의 조직과 직무) <생략> 【255】 제55조(속장의 자격) <생략> 【256】 제56조(속장의 선출) <생략> 【257】 제57조(속장의 직무) <생략> 【258】 제58조(속회 인도자) <생략> 【259】 제59조(교육부의 조직) <생략> 【260】 제60조(교육부의 직무) <생략> 【261】 제61조(사회봉사부의 조직) <생략> 【262】 제62조(사회봉사부의 직무) <생략> 【263】 제63조(예배부의 조직) <생략> 【264】 제64조(예배부의 직무) <생략> 【265】 제65조(문화부의 조직) <생략> 【266】 제66조(문화부의 직무) <생략> 【267】 제67조(재무부의 조직) <생략> 【268】 제68조(재무부의 직무) <생략> 【269】 제69조(관리부의 조직) <생략> 【270】 제70조(관리부의 직무) <생략> 【271】 제71조(감사의 선출) <생략> 【272】 제72조(감사의 자격) <생략> 【273】 제73조(감사의 직무) <생략> 【274】 제74조(자치기관 설치) <생략>	【229】 제29조(부서의 종류) <현행과 같음> 【230】 제30조(선교부의 조직) <현행과 같음> 【231】 제31조(선교부의 직무) <현행과 같음> 【232】 제32조(속회의 조직과 직무) <현행과 같음> 【233】 제33조(속장의 자격) <현행과 같음> 【234】 제34조(속장의 선출) <현행과 같음> 【235】 제35조(속장의 직무) <현행과 같음> 【236】 제36조(속회 인도자) <현행과 같음> 【237】 제37조(교육부의 조직) <현행과 같음> 【238】 제38조(교육부의 직무) <현행과 같음> 【239】 제39조(사회봉사부의 조직) <현행과 같음> 【240】 제40조(사회봉사부의 직무) <현행과 같음> 【241】 제41조(예배부의 조직) <현행과 같음> 【242】 제42조(예배부의 직무) <현행과 같음> 【243】 제43조(문화부의 조직) <현행과 같음> 【244】 제44조(문화부의 직무) <현행과 같음> 【245】 제45조(재무부의 조직) <현행과 같음> 【246】 제46조(재무부의 직무) <현행과 같음> 【247】 제47조(관리부의 조직) <현행과 같음> 【248】 제48조(관리부의 직무) <현행과 같음> 【249】 제49조(감사의 선출) <현행과 같음> 【250】 제50조(감사의 자격) <현행과 같음> 【251】 제51조(감사의 직무) <현행과 같음> 【252】 제52조(자치기관 설치) <현행과 같음>
제 3 절 집 사	제 1 절 집 사
【213】 제13조(집사의 자격) <생략> 【214】 제14조(집사의 선출) <생략> 【215】 제15조(집사의 직무) <생략>	【253】 제53조(집사의 자격) <현행과 같음> 【254】 제54조(집사의 선출) <현행과 같음> 【255】 제55조(집사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 4 절 권 사	제 2 절 권 사

현 행	개 정 된 장 정
【216】 제16조(권사) <생략> 【217】 제17조(권사의 정수) <생략> 【218】 제18조(권사의 자격) <생략> 【219】 제19조(권사의 선출과 임명) <생략> 【220】 제20조(권사의 직무) <생략>	【256】 제56조(권사) <현행과 같음> 【257】 제57조(권사의 정수) <현행과 같음> 【258】 제58조(권사의 자격) <현행과 같음> 【259】 제59조(권사의 선출과 임명) <현행과 같음> 【260】 제60조(권사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 5 절 장 로	제 3 절 장 로
【221】 제21조(장로) <생략> 【222】 제22조(장로의 자격) <생략> 【223】 제23조(장로안수를 받을 자격) <생략> 【224】 제24조(장로의 안수집례) <생략>	【261】 제61조(장로) <현행과 같음> 【262】 제62조(장로의 자격) <현행과 같음> 【263】 제63조(장로안수를 받을 자격) <현행과 같음> 【264】 제64조(장로의 안수집례) <현행과 같음>
【225】 제25조(장로의 직무)	【265】 제65조(장로의 직무)
【226】 제26조(장로의 파송) <생략> 【227】 제27조(장로의 인사관리) <생략>	【266】 제66조(장로의 파송) <현행과 같음> 【267】 제67조(장로의 인사관리) <현행과 같음>
【228】 제28조(장로의 은퇴) <생략> 【229】 제29조(은퇴장로의 예우) <생략>	【268】 제68조(장로의 은퇴) <현행과 같음> 【269】 제69조(은퇴장로의 예우) <현행과 같음>